

2011 상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단위 문예진흥기금

일시 _ 2011. 3. 23(수) 14시

장소 _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주최 _ 성남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단위 문예진흥기금

프로그램 **P R O G R A M**

사회: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연구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14:20~14:35	주제발표 1	기초단위 문화예술 정책과 문예진흥기금의 현황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14:35~15:10	참석자 주제 토론 1	패널 및 방청객 참여 토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기영 의원, 김순례 의원,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이정복 과장
15:10~15:25	주제발표 2	광역-기초지자체 기금사업 사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오세형(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15:25~16:00	참석자 주제 토론 2	패널 및 방청객 참여 토론 성남문화원 김정진 사무국장, 성남예총 조현기 사무국장, 성남민예총 김성수 사무국장
16:00~16:20	휴식	
16:20~16:40	종합발표 1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예진흥기금 운영방안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6:40~18:00	참석자 종합 토론	패널의 발전방안 제언 및 종합토론
18:00~20:00	나눔의 시간	

< 목 차 >

▣ 주제 발표

_발제 1. 기초단위 문화예술 정책과 문예진흥기금의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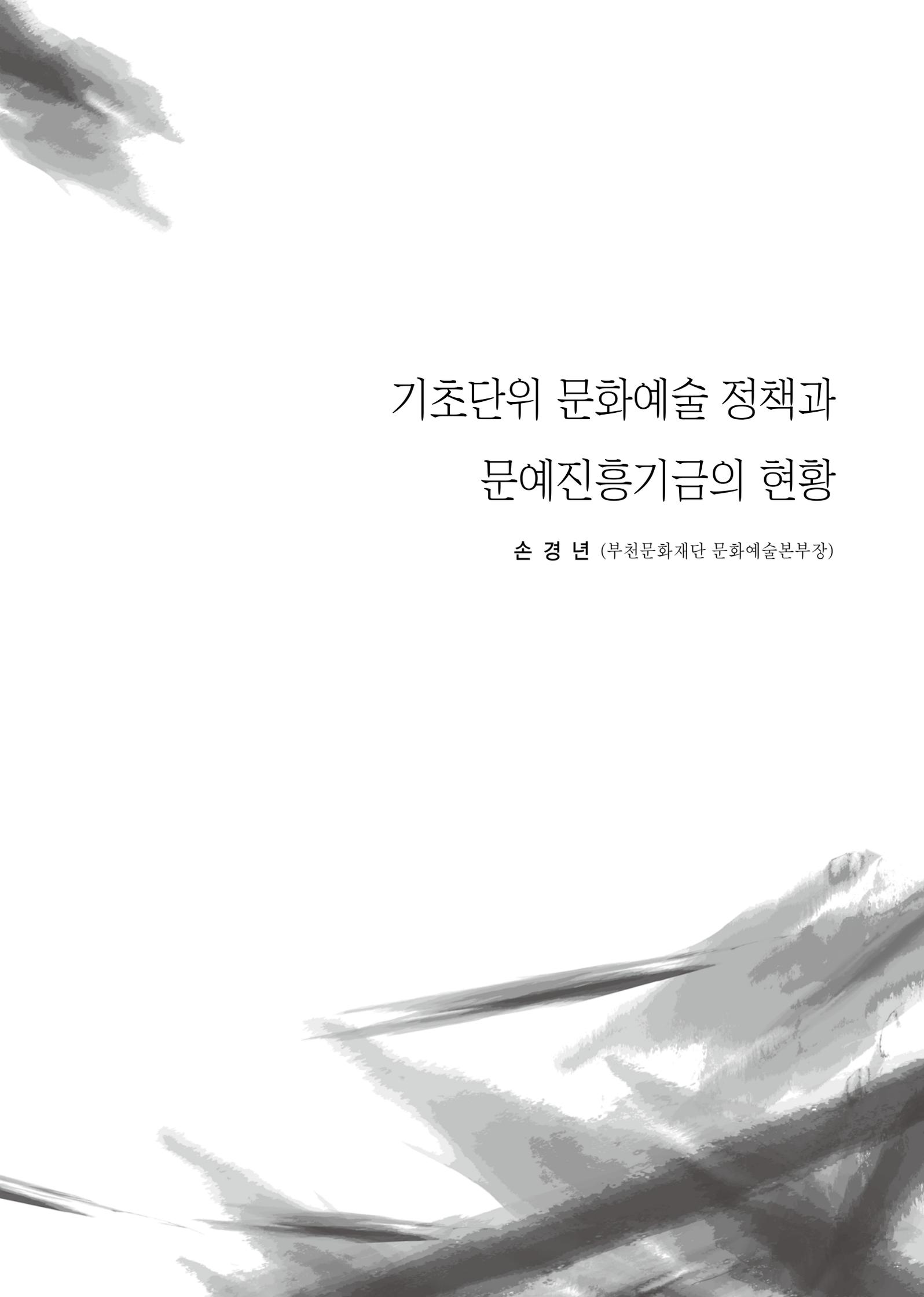
손 경 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_발제 2. 광역-기초지자체 기금사업 사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17

오 세 형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_발제 3.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예진흥기금 운영방안
.....29

라 도 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기초단위 문화예술 정책과 문예진흥기금의 현황

손 경 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주제발표 1.

기초단위 문화예술 정책과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현황

손 경 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시작과 변화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역사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됨.
- 이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보급,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 등임.
- 기금의 수혜자 선정은 예술창작활동 우선 지원, 동일조건 다수혜택 우선 지원,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한 균형 지원, 소요경비 일부 지원, 사업비 중심 지원 등임.
-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6월22일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 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고궁(1975), 박물관(1976), 능·사적지·미술관(1983), 국가지정문화재(1994) 등으로 모금 대상처를 확대.
-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3년 12월31일로 기금 모금 중단.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의의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체계적인 공공 지원 사업시작
 - ※ 1973년 ‘제 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1978)’이 수립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문화공보부와 함께 이중지원체계 형성.
 - ※ 공식적으로는 ‘팔길이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자율성 논란이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방향과 예산 및 기금 1)

■ 문화예술정책 방향

정책 방향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민족문화의 가치 확산
- 품격높은 지역문화의 창조
- 국민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향

운용 방향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1)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개요(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2월

■ 2011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범위

- 2010년 기금 360,478백만 원 → 2011년 기금 259,505백만 원 (100,973백만 원 감)

1)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 31,777 → 21,649백만 원 (10,128백만 원 감)

가. 예술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 24,200 → 15,030백만 원 (9,170백만 원 감)

- 예술창작 지원 : 6,600 → 6,250백만 원 (350백만 원 감)
- 예술전용공간 지원 : 9,440 → 2,830백만 원 (6,610백만 원 감)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1,600→400),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1,900 →1,000),
 -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4,940→1,000), 예술가의 집 운영(0→200)
- 예술행사 지원 : 5,850 → 5,950백만 원 (100백만 원 증)
 - 공연예술행사지원(3,800→4,900), 시각예술행사지원(1,050, 국고에서 이관)
 - ※ 전통예술대중화사업지원(2,050→1,000)은 지역문화예술지원으로 이관
- 스토리 창작 및 유통 지원 : 2,310 → 0 (사업이관)
 - ※ 일반회계(대중문화콘텐츠산업 “이야기산업 활성화”)로 이관(2,310→1,200)

나.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원 : 1,200 → 1,080백만 원 (120백만 원 감)

- 신진예술가의 창작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은 다년(2년)간 집중 지원

다. 국제예술교류 지원 : 6,377 → 5,539백만 원 (838백만 원 감)

- 민간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 4,258 → 3,100백만 원 (1,158백만 원 감)
 - 공연예술국제행사지원(1,900→0, 사업종료)
-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 1,545 → 1,839백만 원 (294백만 원 증)
- 국제문화기관협력및정보서비스 : 574 → 600백만 원 (26백만 원 증)

2) 문화예술공간 운영 : 3,250 → 2,365백만 원 (885백만 원 감)

가. 미술관 운영 : 1,049 → 1,284 (235백만 원 증)

나. 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1,201 → 1,081백만원 (120백만원 감)

다. 대학로복합문화공간 조성 : 1,000 → 0 (사업완료)

3)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 23,700 → 48,000백만원 (24,300백만원 증)

가. 문화바우처 : 5,000 → 24,500백만원 (19,500백만원 증)

○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프로그램

※ '10년 35만명 → '11년 85만명 지원

나. 공연나눔 : 14,500 → 16,5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 사랑티켓(2,400→2,400), 소외계층순회공연(5,800→8,000), 전통공연(1,500→1,300), 문예회관공연지원(4,800→4,800)

※ '10년 70만명 → '11년 100만명 지원

다. 문학나눔 : 2,000 → 4,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문학집배원, 문화멘토사업

※ '10년 2,400개소 개소당 83권 → '11년 2,700개소 개소당 124권 배포

라. 전시나눔 : 600 → 800백만원 (200백만 원 증)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지원

※ '10년 50개 특별전시 26만명 → '11년 60개 특별전시 35만명 지원

마. 창작나눔 : 1,600 → 2,200백만 원 (600백만 원 증)

○ 생활문화공동체(1,200→1,200), 장애인창작지원(400→1,000)

○ 임대아파트 단지,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및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예술가(단체)의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을 지원

※ '10년 20개 지역 3만명 → '11년 20개 지역 4만명 지원

4) 지역문화예술진흥 : 22,650 → 20,250백만 원 (2,400백만 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 11,000 → 11,100백만 원 (100백만 원 증)

○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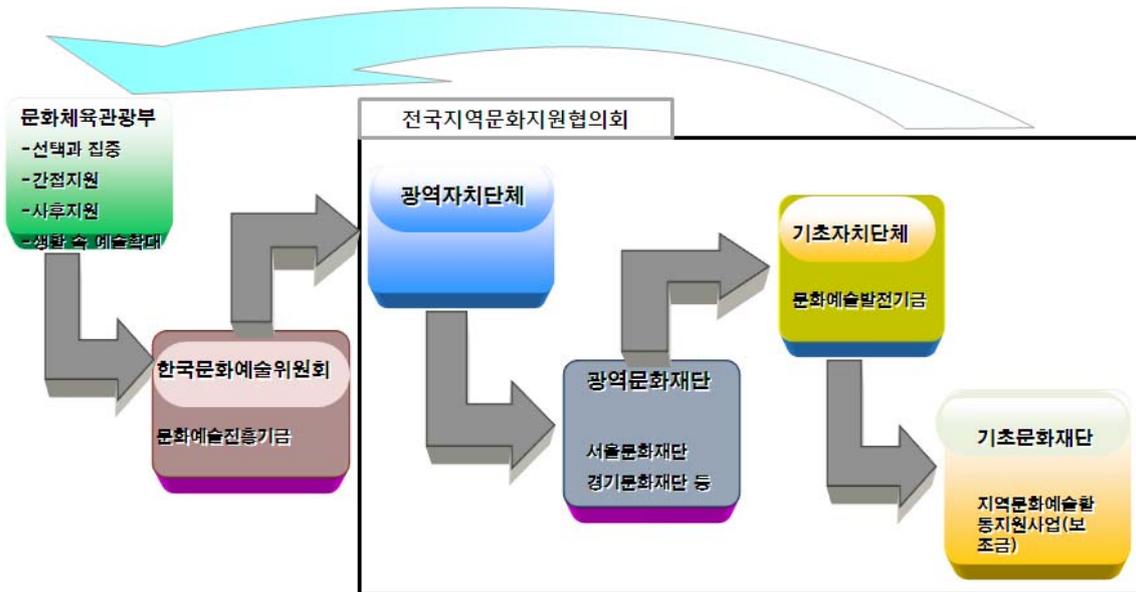
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8,500 → 6,800백만 원(1,700백만 원 감)

○ 공연장은 공연장, 연습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단체는 레퍼토리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객을 개발하고 상호 안정적 운영을 도모

다.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 3,150 → 2,350백만 원 (800백만 원 감)

- 5)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7,734 → 8,256백만 원 (522백만 원 증)
- 가.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 발간 : 874 → 702백만 원 (172백만 원 감)
 - <웹진>, <문예연감>, <문화예술기획시리즈> 등 예술 인식개선 및 예술지원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
 - 나.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 : 6,159 → 7,003백만 원 (844백만 원 증)
 - 기업과 예술의 만남활성화(1,000백만 원, 국고에서 이관)
 - 기부금 사업 및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
 - 다.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 702 → 551백만 원 (151백만 원 감)
 - 예술정책 조사연구 및 연구성과 활용·확산(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 7) 기금 간 거래 : 100,150 → 20,117백만 원 (80,033백만 원 감)
- 복권기금 반환금 : 150 → 117백만 원 (33백만 원 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100,000 → 20,000백만 원 (80,000백만 원 감)
- 8) 기금운영비 : 10,859 → 11,178백만 원 (319백만 원 증)
- 가. 인 건 비 : 6,216 → 6,543백만 원 (327백만 원 증)
 - 나. 기타경비 : 3,269 → 3,115백만 원 (154백만 원 감)
 - ※ “기금조성관리비”를 “기타경비”에 통합
 - 다.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567 → 571백만 원 (4백만 원 증)
 - ※ “지원사업운영”과 “평가제도운영” 통합
 - 라. 경영정보화 : 807 → 949백만 원 (142백만 원 증)
- 9) 여유자금 운용 : 160,358 → 127,690백만 원 (32,668백만 원 감)

■ 문화정책 관계



3.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근거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출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0. 6.18] [법률 제10108호, 2010. 3.17,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 기초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19조에 의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대개의 기초지자체는 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예술발전기금의 목적은 해당 지자체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두고 있음.

■ 예술지원사업 수행 과정²⁾

- 예술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목적 달성을 꾀하는 것’임.
- 지원 사업을 위한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침.
 - 1) 의사결정 : 공고를 통해 신청한 자(단체) 중에서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자 선발
 - 2) 집행 : 지원을 제공받은 각 수혜자의 사업 수행 및 정산
 - 3) 평가 : 각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 궁극적으로 예술지원사업의 본질적 속성은 ‘공공기관이 예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공적자금을 제공하는 것’임. 그러므로 ‘예술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이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됨. 따라서 지원사업의 체계 구성에서 지원자 선정 및 성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예술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부천시와 성남시를 중심으로

1.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발전기금

	부천시	성남시
지원근거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기금심의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4인 + 외부 전문가 3인)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공정성, 객관성 확보	

2) 김정수, “예술지원사업의 심의 및 평가 시스템 개선방안”,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세미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보조금, 부천문화재단기금 지원결정단체·개인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사업의 중복지원과 3년 연속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우선 배제 - 2011년도 1단체 1사업 지원을 예외로 하되, 2012년부터 예총 및 부천문화원을 포함한 예총 산하 9개 지부에 대해서도 1단체 1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을 합의 	
선정대상	69개 단체 및 개인	
대상분야	국악전통, 무용, 사진, 미술,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등	
지원금액	최소 100만원~최대 700만원	

2.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1)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지원근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목적	시군별 자생적인 문화예술저변 확대 및 문화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사업주관 및 운영주체	시군 문화예술관련 재단법인
집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확보 • 사업광고(시군 홈페이지, 재단홈페이지 동시 게재) • 지원신청서 배포 및 접수 •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진행(지원신청서 심의 및 지원금액 결정) • 경기문화재단에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지원 및 사후정산 처리 • 지원사업 평가분석 •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추진체계	<pre> graph TD A[경기문화재단] -- "문화예술진흥사업운영지침" --> B[심사위원회] B -- "심사결과" --> C[시군 또는 재단법인 제1차 사업자] C -- "심사결과" --> B C -- "심사결과" --> D[문화예술단체 제2차 사업자] D -- "지원금 및 사업결과보고서" --> C C -- "정산보고" --> A </pre>
신청자격	경기도에 소재하며 문화예술활동하는 단체

2) 부천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사업명	부천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성남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활동 - 기초예술분야의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 문화예술사업 - 목적별 문화예술사업 <p>※ 창조도시 부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 공간활용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 발굴사업 <p>※부천의 신진예술가 활동사업 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있는 차세대 신진예술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지원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기초예술분야의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 문화예술사업 - 목적별 문화예술사업 <p>◦기획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동네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 • 공공예술사업 - 문화예술공간 가꾸기 사업 - 지역을 위한 공공미술사업 - 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 - 공공예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 커뮤니티 인문학 등 동네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
신청자격	부천시에 1년 이상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단체(개인)	성남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
사업비 부담율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규모	최소 200만원~최대 1,000만원	최소 200만원~최대 1,200만원
총사업비	1억4천만원	

<참고_부천문화재단 사업설명회 자료집 중>

질문 요지	근거	
• 복지관, 문화원 같은 기관에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	▶ 정부 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국고, 지방비, 중앙기금을 정규 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불가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
•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우수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찾아가는문화예술활동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단체도 신청 가능한가?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단, 다른 내용의 사업 계획서일 경우 신청 가능함. (※단, 기금사업은 많은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 방향임)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
•부천시문화발전기금 (부천시 기금)을 지원받는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단, 다른 내용의	

<p>단체가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가?</p>	<p>사업 계획서일 경우 신청 가능함. (※단, 기금사업은 많은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 방향임)</p>	
<p>•부천시문화발전기금 (부천시 기금) 지원단체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작품으로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한가?</p>	<p>▶ 현재 부천시문화발전기금 지원단체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지원사업 신청은 가능함. 단,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부천시문화발전기금,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심의·선정이 우선하는 기금을 지원 받음.</p>	
<p>•지원금으로 업무추진비, 식대 같은 항목도 지출 가능한가?</p>	<p>▶ 본 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 부천시 1:1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 운영지침과 부천시 보조금 회계규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부천시 보조금 회계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는 지원금으로 지출예산 편성이 불가하며, 식비도 가급적 자부담으로 예산 편성</p>	<p><부천시 보조금회계규정 지출예산 편성 불가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비,수선비,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전화기,집기 등) •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업무추진비, 격려금 등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 매식비, 강사료는 보조금액의 30% 이하로 편성(자부담대체) • 기념품(모자,유니폼 등) 구입 • 보조금 수령전 이전 집행사업비는 인정 불가
<p>• 2010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상의 사업내용, 규모가 다를 경우 변경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취소 또는 삭감이 되는데 올해도 적용되는가?</p>	<p>▶ 경기문화재단 운영지침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상의 사업내용, 규모 등이 크게 변경, 축소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음.</p>	

3. 심의 기준 및 진행방식

■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부천지역 내 전문가 2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총 5명 구성
- 심사위원 위촉사항은 심사 종료 시까지 비공개 (사후 공개 원칙)

※ 경기문화재단 사업 지침 근거

- 지원사업 신청자는 심사위원 위촉 배제 -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원 신청한 사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즉 지원신청단체나 지원신청사업과의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해당 지원신청사업 심의 불가

- 지원신청사업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심사위원과 연관이 있을 시에는 지원 결정 취소
- 심의위원 자격 조건 : 부문별 전문가로 (비평가, 연구자, 교수, 공공기관 문화관련 실무자, 문화예술기획자) 심의위원 위촉
- 최종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예비 명단을 기본으로 감사팀 입회하에 추천제로 우선 순위를 선정한 후(관내, 관외 구분) 순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 확정.

3) 심의 방식

일 자	구 분	심사 내용	비 고
2011. 2.14(월)~17(목)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 전년도사업 미정산 단체	
2011. 2.17(목)	2차 서류심사	· 분야별 서류심사 및 지원금 규모 책정 · 모니터링 결과참조	평가표에 의한 채점심사
		· 최종 선정	

4) 심의 원칙

- ① ‘창조도시 부천’ 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문화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사업 우선 지원
 - ② 부천의 신진예술가 활동 사업 우선 지원(역량 있는 차세대 신진예술가 발굴)
 - ③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 참여 등 문화저변 확대 기여 및 지역성을 우선 평가함.
 - ④ 당해 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또는 중앙 및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개인) 의 동일 단위사업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⑤ 전년도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지원사업의 미집행 단체(개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⑥ 전년도 경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모니터 결과 반영
- ※ 심사 시 모니터 결과 내용 첨부

- ⑦ 사업별로 지원금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심사 시 결정)
 - ⑧ 각 사업별 지원금은 최고 한도액인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판단 하에 선택과 집중 지원 가능
 - ⑨ 지원 결정 사업자가 지원 결정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동일한 분야 차점자 순으로 지원 - 심사시 예비 후보사업 10% 선발
- ※ 동점자일 경우 ‘창조도시 부천’ 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문화공동체 활성화’ 를 위한 사업 우선 선발

5) 심사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등(계획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집행단계)
-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성과단계)

<참고_부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심사기준표>

영역	심의기준 (가중치)	점수	세부평가내용
계획 단계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사업운영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지원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 전년도에 제기된 문제점(모니터 결과)에 대한 사업개선 방안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프로그램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사업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월성 (2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은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사업계획이 독창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집행 단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와 지원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진행에 참여기로 한 주요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객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기금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예산 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 - 개인, 기업 등 민간기부금(후원, 협판) 유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성과 단계	해당분야 발전예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은 예술현장의 상호 교류(지역 간, 장르 간, 국제교류 등) 활성화, 해당분야 발전 및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참여자, 관객 등)의 만족 수준은 어떠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사업 결과가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가 높은가?

□ 토론 - 제기되는 문제점

- 우선, 그동안 문화예술위에서 수행해 왔던 문화예술지원이 효과적이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발제 3_라도삼에서 문제제기)
 -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기금의 흐름이 지역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활성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어떤 예술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단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기만을 원하는 예술가인가, 지역을 뛰어넘은 예술가를 기대하는가. 어떤 전망으로 예술가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지원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봄.
 - 기초단위에서의 사업수행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
 - 기초지자체의 문예진흥기금의 대상과 광역에서 내려온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대상 간의 차별화 된 지원기준 설정 필요
 - 지역의 경우 동아리와 예술단체 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음.
 - 기초에서의 문화예술발전기금지원, 재단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경기문화재단의 우수프로그램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동시에 공모하여 중복지원이 될 경우, 담당자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면 중복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각각의 지원에 있어서 대상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이에 대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경우 지역의 예술활동에 지원하고 문화재단은 지역의 예술가(단체)의 활동역량 강화 및 지속적 지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광역에서의 지침과 기초에서의 지침이 충돌이 생길 경우, 상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함.
-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마무리가 됨. 정산의 경우 지원금액 대비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편임. 최고 1000만원 혹은 1200만원, 최저 100만원 혹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기초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 업무가 하나 덧붙여진 결과가 됨. 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 사업에 대한 모니터는 필요함. 기초의 경우 시민모니터를 수행하고 광역에서 전문가 모니터를 지역에 결합시켜주는 방식이 필요. 기초단위에서 전문가 결합은 예산 상 어려움이 있음.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문화예술계의 여건, 서울 중심의 문예진흥기금 지원 실태, 공모사업 신청건수 확대에 따른 지역현장 특성 반영 취약, 지역문화재단 설립 증가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간의 기능중복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중앙의 기금운용방식이 광역을 통해 기초에 그대로 이식되는 것에 다름 아님.



광역-기초지자체 기금사업 사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오 세 형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주제발표 2.

광역-기초지자체 기금사업 사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오 세 형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광역-기초간 문예진흥기금사업

· 시군에 이관하는 문예진흥기금사업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부터 문예진흥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제도와 기금운영상의 변화도 많았고 지원체계도 장르별지원, 목적별지원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 기초지자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중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시군의 문화재단과 매칭하여 이관한 부분이다. 2009년 4개 시(市)의 문화재단과 335,000천원을 매칭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었다. 먼저 그동안 광역단위로 지원사업을 하다보니 생활예술, 동호회, 예술관련 협회 등 각 예술활동주체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접근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술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지역단위의 정책과 기획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기초단위 문화재단은 공연장 운영이 주목적이었으나 재단법인화되면서 점차 지역문화진흥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중이어서 매칭기금은 주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다. 물론 지역의 여건이 공모지원사업이라는 문화행정의 객관성을 아직까지는 담보할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고, 경기문화재단의 고유한 역할을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는 이견도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매칭사업은 8개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고 이후로 용인시, 군포시 등이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 표1.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협력시군 매칭사업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군	2009년 예산 경기/기초	2010년 예산 경기/기초	2011년 예산 경기문화재단	비고
고 양 문 화 재 단		106,000 / 132,000	63,000	2년
부 천 문 화 재 단	136,000 / 136,000	100,000 / 70,000	78,000	3년
성 남 문 화 재 단			64,000	1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95,000 / 35,000	65,000 / 18,000	52,000	3년
안양문화예술재단		76,000 / 157,000	45,000	2년
의정부예술의전당	74,000 / 26,000	53,000 / 20,000	42,000	3년
하남문화예술회관	30,000 / 30,000	20,000 / 20,000	21,000	3년
화성시문화재단		39,000 / 20,000	32,000	2년
계	335,000 / 227,000	459,000 / 461,010	397,000	

협력시군 매칭사업은 몇 가지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다. 2년 이내에 매칭기금을 1:1 이상으로 확보할 것, 공개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것, 다양한 문화예술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이 외의 요소들은 자체적인 방침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점차 자율성을 확대해가며 진행되고 있다.

· 공동기획사업

이 외에 2006년부터 일부 기초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실시하던 기획사업이 꾸준히 있었다. 주로 지자체의 공연축제나 문화사업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확산과 특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안산시의 국제거리극 축제와 의정부시의 국제음악극 축제 등은 행사성사업에 치중해있어 연계프로그램이 빈약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관련된 국제심포지움이나 전문가워크숍을 지원하면서 정책적 공조를 확대시켜 나갔다. 사업성격은 국내예술가와의 연계사업이나 시민과의 교류활동 위주로 진행됐는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공감대 확산과 성장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공연장의 일반적 기능인 시민의 향수권신장을 넘어 시민을 문화주체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육성사업’도 추진했다. 이는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문화시설운영 위주에서 다층적인 층위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의 경우 소극장을 지역의 문화예술 동호회와 시민문화활동을 위해 오픈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역할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 표2.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공동추진한 기획사업

사업명	협력 기초재단	시행연도
안산국제거리극 학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6~2008
국제공연예술워크숍(2007)		
더불어사는 사회문화제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외	2006~2009
천상병예술제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제작 워크숍 (의정부음악극축제)		
국제레지던시 ‘땅따먹기프로젝트’	재) 성남문화재단	2007

○ 표3. 경기문화재단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육성 선정사업(2008년)

사업명	단체명	협력기관
우리가 만든 음악극축제	음악극아카데미운영위원회	의정부예술의전당
2008 동두내 옛소리 특성화 프로젝트	동두내옛소리특성화운영위원회	동두천문예회관
배우며, 만들며, 공감하며 Season2	상록수연극스튜디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동체 예술아카데미 ‘소통과 만남 프로젝트2	광명문화의집기획위원회	광명문화의집
문학과 시민의 창조적 만남, 그 이후	너른고을문화창작아카데미운영위원회	광주시민회관
안성맞춤 사진영상 워크숍	안성맞춤문화브랜드추진위원회	안성시민회관

· 네트워크 사업

2009년부터는 경기도내 문화기관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경기문화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몇 번의 논의를 거쳐 3가지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중심의 학예분과, 문예회관종사자로 구성된 문예분과, 문화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2009년은 ‘경기도 문예회관 세미나’, ‘학예사가 본 경기도 문화유산’ 워크숍, ‘문화재정책토론회’가 열렸고, 학예직 종사자와 함께 일본연수(일본 큐슈, 가나가와현)를 통해 문화유산과 관련기관을 돌아봤다. 2010년에 진행된 사업은 기초문화재단 관계자와 함께 광역·기초간 협력과제 논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했고 지역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문화지표조사 교육, 지역문화활성화나 문화기관운영과 관련한 심층컨설팅을 10여 차례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광역-기초간 협력사업의 범주는 직접예산지원, 문화시설(인프라) 역할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기관간 네트워크로 분류할 수 있다. 아직 예산도 소규모이고 시범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추후로 중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범주의 전문화,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협력사업은 매번 상당한 이견과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사업협약에 이르기까지 난항들이 놓여있다. 광역과 기초문화재단간의 정책적 관점과 운영방향이 기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사업과정이 평이하고 사업이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기금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서로의 입장차가 많이 드러났다.

□ 기금사업과정의 입장과 쟁점

광역-기초간 문예진흥기금사업(지역문화예술활동)은 지역별로 요구하는 정책의 심도와 시각차가 상이해서 중재하기가 까다로우며 평균적이거나 중립적인 지침과 제한된 자율성을 전제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 시측에서는 중복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단의 기금사업을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기 쉬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 높은 선정율로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초문화재단에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다루려고 해도 예산을 매칭해주는 지자체의 견제와 입김으로 사업이 순항하기가 쉽지 않은 곳도 있었다.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일부 기초문화재단은 해당지자체 이외의 타지역의 우수한 단체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어떤 곳은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연단체 선정율을 높이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시각 예술이나 문학이 선정결과에서 외면받기도 하였다. 어떤 지자체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강조점을 둬으로써 기존 재단기금사업의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사업이 선정되기도 하였다.(예:만화,영화,콘텐츠 사업 등) 이런 시도가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적 자발성에 의한 것일 때는 변화를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수용하게 된다. 다만 경기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기존 지역문화예술활동에서 지원받던 비균일적이고 다양한 예술주체를 일정부분 존중하고 수용하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이 확고하여 기존 수혜대상의 축소가 예상되더라도 연락처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거나 대안마련을 요구하였다.

광역문화재단은 적극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초문화재단과도 협력해야 하고 문화행정 위주의 기능적 역할에 머물러있는 소극적 태도에도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하고 비균일한 주체의 수용방식을 묶어두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광역문화재단은 수동적이고 한 템포 늦은 반응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럴 때 기금매칭사업과 함께 경기문화협력네트워크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가야 한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

서도 적극적 제도변화에 대한 요구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200만원의 기금에도 단체의 생사가 결정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고 소액에도 열정과 신념을 담아내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변화의 동력부족과 창조성 결여로 정기적 행사로 겨우 버텨가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다양한 양상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넓게 외연을 잡고 유연성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의 지원제도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변화의 물고를 터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역정책은 중앙의 모델과 달라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지자체가 허약한 기초지자체의 경우와 지나치게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지닌 기초문화재단 사이에서 경기문화재단은 당분간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기금사업에 대한 관점은 지자체의 시책사업의 수단이나 공연장운영의 보조적 장치로 보는 경우부터 자체적인 문화정책과 공조하려는 긍정적인 관점까지 극단화되어 드러났다.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은 커뮤니티 육성사업에 수년간 일관된 정책을 수행해왔고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기금사업과 충돌되는 지점에 지속적인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매칭사업은 미뤄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시사점

지역단위 공모사업의 문제점은 사실상 제한된 영역에서의 경쟁이어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나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광역의 경우만 해도 수요층이 넓지 않아 익명적 경쟁이라는 점이 애매하기 마련이다. 우수한 단체는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단체의 유입이나 수준이 낮은 예술단체의 도태가 더디게 이루어진다. 이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내려오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행정기관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게 된다. 이렇게 예술활동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공모제의 방식을 취하는 공공기금의 한계는 명확해진다. 이는 문화정책의 수단과 방법이 보편적 방법이 아니며 환경과 조건이 다른 지역단위에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된다. 예술단체가 80개 내외인 지자체에서 매년 50건 이상을 지원하는 공모패턴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공개공모방식은 행정적으로는 편의적일지는 모르지만 지역문화발전 기여도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기초문화재단에서의 문화정책기능은 사업과 관련한 인력, 예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아직 열악한 상황이며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역적 특색없이 건립된 문화인프라(공연장, 미술관)의 역할 모델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고 반면에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결합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표4, 5 참조) 여기에 독립적인 위상을 지니기 힘든 문화행정의 후진성과 예술단체의 다양성부족은 지역문화발전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행정공무원, 문화재단의 전문인력, 예술인은 이러한 기금사업이 발전적 방향을 향한다기 보다는 관행적이고 제자리에서 곁도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며 변화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표4. 경기도민의 문화행사 관람율 (2007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행사관람율(%)			경기도내 지역별 관람율(%)		
	경기도		전국	지역		
	2002	2007	2006	거주시군	도내 타시군	서울/기타
사례수	(1,200)	(1,950)	(3,000)	(1,950)	(1,950)	(1,950)
영화상영	66.3	67.9	58.9	51.8	12.6	22.2
연극공연	18.9	8.3	8.1	3.1	0.7	5.2
연예공연(콘서트,쇼)	21.4	7.5	10.0	4.3	0.4	3.5
미술전시회	23.1	6.5	6.8	2.0	0.8	4.4
클래식 음악/오페라	11.6	4.0	3.6	1.2	0.7	2.5
전통예술 공연	19.2	2.9	4.4	1.5	0.8	0.9
문학행사	14.4	1.2	4.4	0.6	0.2	0.5
무용공연	6.3	0.9	0.7	0.5	0.3	0.3

○ 표5. 경기도민의 문화시설 이용율 (2007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2002	2007	2006
사례수	(1,200)	(1,950)	(3,000)
전체	-	30.0	-
도서관(학교도서관제외)	27.2	13.8	12.8
시·군·구민 회관	22.5	8.5	11.2
박물관/미술관	-	6.6	12.3
문화예술회관	-	5.3	11.3
복지회관(여성관 포함)	9.7	4.7	7.5
청소년 회관	7.4	3.3	3.6
시설 문화센터	24.2	2.7	4.6
대학교 부설사회(문화)교실	4.6	1.4	1.4
문화의 집	-	0.7	-
문화원	6.0	0.6	2.1

지역예술단체는 자체적인 노력과 모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기금 의존도가 높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예술계는 기금영역 단위별로 폐쇄적인 구조로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외부세계와 교류하지 않고 흐름이 없는 지역은 문화적 탄력성과 개방성을 잃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문화적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공공기금의 직접지원방식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기금의 축소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과 광역의 문예진흥사업은 간접지원으로의 변화와 혜택받는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기금도 앞으로는 객관성의 확보와 효율성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국한된 것이 아니며 지역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발상과 문화주체의 육성으로 변화요청을 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팔길이 원칙이라는 자율적 지원모델은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일정부분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금사업은 예술단체가 문화시장과의 결합과 변화의 모색을 추구하는 것에 둔감하게 만들고 말았다. 지자체 단위, 광역단위의 기금사업이라는 울타리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변화에 무감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지자체와 광역재단, 중앙기금사업의 지속은 예술의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예술이 관제화되어가고 있고 예술가들은 자기검열이 내재화되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복지 관련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다.

□ 지자체 문화정책의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문예진흥 기금사업의 방향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찾아 내기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담보한다. 기금사업만으로 문화예술을 육성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기금사업은 정책실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위에서 거론했다시피 자율적인 예술활동의 양양이라는 관점은 지역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기 힘들다. 비록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없이 작은 성과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기금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일은 기초문화재단의 정책적 방향설정과 사업의 다양성, 전문인력 개발과 같은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독립적인 시각과 정책적 관점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 공연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초문화재단은 지역커뮤니티나 시민문화 육성사업을 부수적인 사업으로 여기길 쉽다. 그러나 지역문화정책이란 이러한 위계화된 사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금사업의 경우 공정성이나 투명성과 같은 원칙보다는 예술활동의 총량확대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사업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인물, 명소개발, 특산물, 축제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던 문화사업의 패러다임은 약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문화사업은 다양한 문화주체의 출현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화주체라는 대상도 기존 정책의 전제를 벗어나 새롭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문화는 독립적인 상수가 아니라 경제, 정치, 교육 등과 관련된 종속변수이며,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지역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생활공동체 예술과 같은 사업들이 지역에서의 문화예술범주를 다시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급예술과 생활예술이라는 위계화, 실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카테고리 또한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해외의 지역단위에서는 최근 커뮤니티아트센터와 같은 성격의 인프라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3331 아트 치요다, 영국의 ARTLINK CENTRE, 독일의 탄츠하우스와 같은 곳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위적 실험예술과 뜨개질 강좌가 같은

중요도로 다뤄지며, 시민이 만든 공예품 판매와 예술가들의 레지던시가 같은 공간에서 수행된다. 시민이 예술가의 아우라에 압도당하고 서로를 대상화 시키는 것이 근대의 패러다임이고 공연장과 미술관은 이러한 예술의 위계적 관점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학이데올로기가 작은 도시나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문제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출발점은 바로 지역문화기관이나 전문인력들의 경험과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문예진흥 기금사업에는 모순되는 이해관계와 장단점이 켜켜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지역의 현장에 맞게 긍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문화에 대한 통찰, 문화적 관성과 통념에 대한 대안마련, 예술에 대한 비전, 문화정책에 대한 현실감각... 이러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창의적 역량과 경험축적과 함께 지역정책의 씨앗들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될 것이다.

A traditional Korean ink wash painting (Hwasang) depicting a mountain landscape. The style uses varying shades of grey and black ink on a white background to create depth and texture. The composition features a prominent mountain peak on the right side, with a smaller peak visible in the upper left corner. The brushwork is expressive, with some areas showing more detail and others being more blurred, suggesting mist or distance. The overall mood is serene and contemplative.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예진흥기금 운영방안

라 도 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3.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예진흥기금 운영방안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이양의 뜻과 의미

1. MB정부 예술정책에 있어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된다. 1)간접지원 2)사후지원 방식의 도입 3)지방이전 4)생활문화 육성 등. 예술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버리고, 예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지원하겠고, 그 지원을 지방에 이양, 각 지역 단위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돕고, 많은 지원이 예술가들보다는 국민들의 생활, 실제적 혜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다. 여기에 ‘책임심의위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진행되며 변화는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지원 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예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예술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며, 지역단위의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한 의지같다.
2. 예술정책의 지방이양은 때문에 매우 정당하게 보인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방향과도 합일되며, 지자체가 안정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지방이양 제도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 지방이양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혹은 소기의 내세운 ‘정당한’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지방이양 자체보다는 그 이양이 실효가 있는가와 내세운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하고 있는가이다.
3. 지방이양의 순수한 뜻은 두 가지 의미로 함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지역(지방정부)이 주체가 되어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의 자원이 지역에 순환될 수 있도록 이전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

다. 전자는 사업과 예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업과 예산의 이전을 통해 지방과의 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인력과 자원이 이동하는 것으로 전자가 직접적 효과를 노린다면, 후자는 간접이고 확대된 형태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단지 사업과 예산만 가는 것보다 사람이 가고 관련된 자원이 가 (산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의미는 매우 크다.

4. 그러나 현재는 바로 이 후자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듯 보인다. 분명 지방이 양에 의해 진흥기금이 공모제 등 여러 형태로 이전되고 있는데(사업과 예산의 이전), 중앙의 인력이나 (예술자원)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폐쇄적 형태로 운영된다. 타 지역 사람은 각 지자체의 공모에 낼 수 없다라던지, 지역 간 협력모델이나 중앙과의 협력 모델 자체를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사안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역에선 ‘파이’만 커진 것이다. 커진 파이를 지역에 순환하기보단, 보다 우수한 예술가와 자원이 밀집하도록 유도하기 보단, 지역 내 예술가를 위한 ‘분배자본’만 늘어난 거고, 그만큼 폐쇄성은 더해 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폐쇄성과 역효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 미래를 위한 기초단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

5. 알다시피, 예술정책은 크게 변하고 있다. 그 주요한 흐름은 이렇다. 첫째, 대상이 변한다. 과거 예술정책이 주로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커지는 문화정책은 국민, 즉 예술가가 아닌 그 예술로 인해 혜택을 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예술가를 위한 지원은 줄어든다. 그 예술가가 국민-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지원의 근거가 된다.

둘째 흐름은 때문에 ‘순수한’ 예술사업보다는 국가나 국민을 위한 어떤 ‘목적성’ 사업이 주목을 받는다. 향후 예술사업에 대한 지원은 그것이 국가적인 ‘수월성’을 목적으로 한다거나-하여 국가적인 예술적 명성이나 가치를 높이는 일- 아니면, 국민들의 삶에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된다.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문화의 강조, 시장 등 국민들의 일상적 삶터에 대한 예술공간화, 공공예술과 공동체 예술의 강조 등의 그 흐름이다.

셋째, 중요한 다른 한 축은 예술(가)를 위한 시장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창작공간의 건립이나 공공문화시설의 건립, 예술시장(arts market)의 개발 등이 포함되며, 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의 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창출 사업이 포함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협력(약)이다. 과거 예술정책의 주요한 중심은 (중앙)정부였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방과 문화재단, 그리고 일반 기업과 각 민간재단 및 예술기관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나아간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각 기업 및 민간재단이 참여하는 ‘서울문화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예술기관들과 협력하는 ‘예술캠퍼스’(Arts Campus)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지역 내 예술시설을 연결하는 ‘세종벨트’를 통해 공동마케팅과 기획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게 변화된 형태다. 앞으로 예술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지역 내 문화재단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기업과의 협력, 각 예술기관과의 협력 등 포괄적 형태의 협력과 협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6. 지역문화의 역할은 때문에 매우 커지고 중시된다. 그것은 각 지역단위, 구체적인 정책이 집행되는 지점에서 ‘지역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 내며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을 어떤 (예술)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의 네트워크는 무엇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기관들과 협력할 것인가? 그저 주어지는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현존하는 ‘지역’(지방경계선)에 집착하여 우리 지역(방)의 예술가만 챙긴다면, 희망은 없다. 점차 성과를 중시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지역민들 사이에서 인정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예술가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게 통할 수 있을까?

지금은 창의성이 요구된다. 협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자원개발과 마케팅, 홍보가 요구된다. 지역문화재단은 관성이 아닌 변화를 요구하고, 예술가가 아닌 주민의 삶을, (중앙)정부의 돈이 아닌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협력을 요구한다.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초문화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쥐고 있는 열쇠될 것이다.

□ 기초단위 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7.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변한 것은 ‘효율성’에 대한 강조다. 대부분 기관은 원컨 원하지 않건 두 가지 평가를 받는다. 그 하나는 ‘(고객)편의성과 만족도, 신뢰도’ 등 ‘고객평가’고, 다른 하나는 사업을 통해 얻는 ‘성과성’에 대한 문제다. 즉, 얼마나 주민-시민들에게 만족을 줬고, 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나타냈느냐가 오늘날 모든 기관이 고민하고, 평가받는 숙제다.
8. 예술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냐라고 불평하는 예술가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목소리고, 어느 곳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불평에 불과한 사항이다. 모든 것은 엄밀히 측정되고 평가받는다.
9. 물론, 예술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성이나 진정성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물론 불가능한 항목 중 하나다. 예술이 갖는 주관성과 맥락성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작품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트렌드를 형성하였는가, 지역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등은 오늘날 정확하게 계산되는 항목 중 하나다.
10. 이 얘기는 물론, 평가가 집중하자는 말은 아니다. 말하고 싶은 건, 예술(지원)정책 또한 성과평가라는 항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민들-예술가가 아닌-이 측정하고 제시하는 고객평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원은 늘어나고, 그 지역에 보다 풍족한 예술시장의 기반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 중요한 것은 각 지역재단이 창의적 의지를 갖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다. 그 하나는 사람이다. 각 지역을 살펴보고, 창의적 의제를 발굴하여 예술가를 조직, 지역의 예술-문화공간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기획력 및 조직력이 있는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지역문화재단이다. 지역문화재단에 있어 사람은 기획자(planner)인 동시에 예술가를 조직하는 조직자(organizer)이고, 사업을 집행하는 실행자(executant)가 되어야 한다.

12. 두 번째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 즉 돈이다. 실제 많은 사업들은 돈이 있지 않으면 돌아가기 어렵다. 문화사업을 위해서는 실패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진정성과 수월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시각은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져 절대 낮은 수준의 사업에는 응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돈은 매우 중요한 항목 중 하나다.
13.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력이다. 예술가와의 네트워크,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 정부와의 관계, 심지어는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체계 구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협력을 요구한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집행주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4. 마지막으로 권한이다. 실제 지역(방)단위 정부에 들어가면, 직급이 전문성이 되고, 정책은 거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축제, 공연단체(프로그램)의 유치 등 사소한 문제까지 직급이 무기가 된다.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지역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에, 문화(예술)사업은 대부분 시혜성 정책사업이 되고, 그 결과 대부분 사업은 전문가 외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전문가가 나중에 이를 수습하는 양상이 된다. 전체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 그것이 지역문화재단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15. 그러나 이를 다 갖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전국의 어떤 문화재단도 이런 힘과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무엇보다도 ‘사람’과 ‘협력’이 중요하며, 이 ‘사람’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한 문예진흥기금의 지방이양은 분명, ‘돈’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일정 지방정부로부터 이탈하는 ‘권한’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협력’의 방식으로 가고 지역문화를 키우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모제와 같은 단순한 우편배달부식 사업추진보다, 지역문화를 기획하고 지역과 지역 간을 넘어 예술가와 협력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 창의적 문화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을 개간하고 발굴하는 문화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 때문에 난 현재 지역 간 배분방식으로 전개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방이전에 대해선 문제가 많다고 본다. 오히려 지역이 창의적 계획 하에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프로젝트를 심사해 성과가 보이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형태의, 예술가 대상 공모사업이 아닌, 지역문화재단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쉽게 말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통해 각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발하는 방식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굳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지방에 내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18. 지역단위 문화-예술정책 사업 공모를 통한 지원을 할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지역 간 폐쇄성’이란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역과 지역 간 협력일 경우, 지역 내 예술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예술가가 참여할 경우, 그 명망과 헌신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고, 단지 지역에 공모하거나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주단체 지원사업, 변형된 형태의 기획 지원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과 돈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사람과 자원이 공유되고 교류되는 것이다.

19. 향수자 지원과 예술가 지원이란 매우 잘못된 방식의 이분법적 지원도 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지원정책을 보면, 각 기관에선 예술가 지원과 향수자 지원을 나누고, 아마추어 단체를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을 향수자 지원이라고 한다. 사실 엄밀히 말해 향수자 지원이 되기 위해선 그 수혜 대상은 예술과 전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예술마케팅과 관련된 시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향수자 지원이다.

오히려 지역 단위에서 분류하는 방식은 난 예술지원과 문화지원으로 나누는 게 낫다고 본다. 예술지원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을 매개로 한 지원방식을 말한다. 반면 문화지원은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 내 문화공간 및 환경연출을 기획하는 등의 정책을 말한다. 전자는 후자를 매개하고, 후자는 전자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 즉,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을 매개로 한 지원방식은 국민들의 삶에 나아가 문화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문화발굴 및 연출은 예술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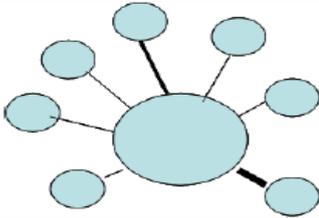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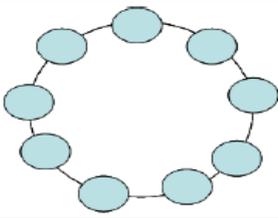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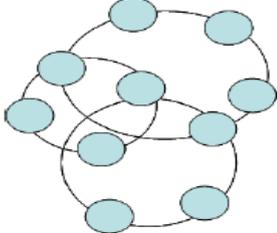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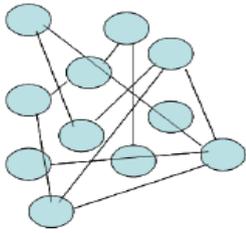
20. 적어도, 지역의 문화재단이 우편배달부가 아니라면, 지역이란 구체적 단위에서 주민과 함께 문화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런 기관이라면 지역의 문화기관들은 예술사업과 문화사업의 교류와 선순환을 통해 지역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과를 낳는 것이고, 협력과 권한을 낳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지역민을 조직하고, 예술가를 조직하며, 지역과 예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와 지역문화환경을 낳는 것, 그것이 지역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 보다 나은 지역협력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21. 지방이양이 제대로 된 목표를 수행하려면, 지적인 바와 같이 그 결정권이 이양하는 동시에 각 지방과 지방을 넘나드는 자원의 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 단위의 협력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22.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에서 나는 지역 협력모델로 4가지를 제시하고, 현재의 중앙형(A) 모델에서 원탁형(B) 모델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형(C)와 사업형(D)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 있다.(임학순·서지혜·라도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pp.236~241) 나는 현재도 이 주장이 유효하다고 본다. 지방이양의 본 뜻이 제대로 실현되고, 각 지역별 문예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지역이 발전하는 바탕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력모델은 ‘지역형’과 ‘사업형’ 모델로 발전해야 하며, 때문에 기초단위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둘째, 다른 한편, 지방이양을 통한 지역 예술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던져주기식’ 지방이양보다는 지역 내에서 예술기금이 제대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게 필요하다.

- 1) 지원기금의 운영은 지역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지역에 기금을 내려주는 <예술위원회>나 상급의 광역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은 ‘목표체계’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 목표체계 하에 필요한 성과체계를 만들고, 그 협의 하에 지역이 마음껏 자율적으로 사업하도록 하는 방식, 그것은 진정 ‘자율성의 이양’을 전제로 한 지방이양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사업의 항목을 정해주고, 그 사업과 돈을 이양해주는 것은 사업을 이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불편한 사업’들을 이전해 줬다는 오해도 살 수 있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역 단위 ‘불만’을 채우기도 어렵다. 따라서 난 지역과의 MOU를 통해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가 합당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목표지향적 지원제도 또는 지방배분제도를 권하고 싶다.

	중앙형(A)	원탁형(B)
일원적 모델		
구성	중앙에 의한 구성 및 통제 법적/제도적 절차	지역 간 협력체계 정치/정책적 협의
구속력	강	중강
협력성	약	중약
지속성	강	중강
	지역형(C)	사업형(D)
다원적 모델		
구성	지역단위 협력네트워크 구성 - 광역 또는 인접 광역 간 - 인접성과 필요중심	사업 및 정책 공유 - 사업 및 정책 공유가 필요할 경우 - 사업과 필요중심
구속력	중약	약
협력성	중강	강
지속성	중약	약

- 2) 지원금을 내려보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자원을 내려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내려오기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공감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위원회>나 광역단위 문화재단에서는 지원금보다 관련된 기획자나 예술가, 전문가들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획자 및 예술가, 전문가들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지역문화재단에

서는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또한 발전할 수 있다.

3) 더불어 심사나 평가제도와 같이 지방에 이양된 기금을 집행하는데서 오는 막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이를 일부분 중앙이나 광역단위 문화재단에서 대행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역협력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 어떤지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제도가 있으나, 이 평가제도는 지역협력사업 시행 여부보다는 각 지역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업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

4) 지역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 혹은 광역적 홍보가 필요하다. 사실 지역은 홍보가 쉽지 않다. 때문에 <예술위원회>나 광역단위 문화재단에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지역으로 사람과 자원이 순환하는 바탕을 만드는 자원일 것이다.

24. 진정한 지방이전-지역협력형 사업-이란 단지 사업과 돈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말 그대로 ‘지역협력’을 이루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사람과 자원이 순환하고 공유, 교류되는 시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과 지역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가장 하위단위에서 중앙이나 광역의 일을 심부름하는 ‘센터’의 직원이거나 ‘우편배달부’가 아니다. 그들은 가장 기초단위에서 지역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예술현장과 시장에서 예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에 중심에 서야한다. 그들이 기획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협력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낮은 바닥에서부터 창의적인 기획자가 되고, 그 그룹이 네트워킹하며 우리의 문화예술현장을 이끌어 갈 때 우리의 예술계, 문화재단은 가장 현장감있고, 기획력 있으며, 지역민에게 그 성과를 인정받고 ‘아!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를 지역민과 지역의 정치주체에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재단이 될 것이다.

25. 필요한 것은 사업과 돈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결정권’과 ‘지역을 기반으로 환류하는 사람과 자원’이다. 그 사람과 자원이 지역을 단위로 순환될 수 있도록, 많은 결정권을 이양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그런 협력전략이 나왔음 한다.

2011 상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단위 문예진흥기금

발행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하 동 근
기획총괄 박 승 현
기획진행 유 상 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16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af.or.kr / www.snart.or.kr
디자인/인쇄 맥스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11. 3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2011 상반기 문화정책 대화모임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단위 문예진흥기금

